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의료보험수가현실화에 대한 제반 당면문제와 치과의료 인력 적정수급문제 심의끝에 건의문 및 결의문 채택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회장尹興烈)는 지난 9월10일 서울 대 처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가진바 있다.

금번 임시총회는 치과계의 시급한 당면과제인 의료보험 수가현실화 및 이와 수반된 현행의료보험제도의 개선, 그리고 치료의료인력의 적정한 수급 방안등에 대한 서치회원의 의견한 결의를 표출하기 위한 총회였다.

이날 108명의 대의원이 참석, 미리배포된 결의문과 건의문을 항목별로 심의, 약 2시간 여에 걸친 열띤 토론끝에 치협과 보사부에 대한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난 9월10일 개최된 서치 임시대의원총회 장면(왼내는 尹興烈회장))

건의문

항상 전국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대한치과의사회의 임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소수의 의견이 아닌 다수의 의견을 집약하여 국민복지에 위한 진정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의 대의원들은 의료보험문제에 있어서 의료인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정책하에서는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의 지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정도의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여 강력한 강구책이 있기를 바라며, 또한 인력수급문제는 국민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수급, 교육, 경제 및 문화적인 고려가 앞서야 할때도 불구하고, 치과대학 졸업예정자가 1년500여명, 전문대학의 치과기공과 졸업예정자가 1년1300여명등의 배율은 교육인력의 국가의 낭비와 함께 치과의료의 질저하와 더불어 부정의료행위를 야기시키는 사회적인 증대문제로 이의 해결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인력수급 및 의료보험문제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건의하오니 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보험문제

- 1) 보험청을 신설하고 보험자단체는 피보험자 관리업무를, 의료단체는 심사업무를 관장하여야함.
- 2) 비합리적인 의료보험 수가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와 치과의료단체와의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치과진료의 특수성을 감안 무형의 기술료가 포함된 진료수가를 책정할수 있도록 요망.
- 3) 환자에 대한 진단, 처치등 치과의사 고유의 진료업무에 어떠한 규제나 역제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치과의사의 상근심사위원 임용이 필수적으로 선행되도록 요망.
- 4) 현행 비합리적인 비합리적인 조항을 폐쇄하여 의료인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비민주적인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강제 지정등을 개정하도록 요망. (상기1항부터 4항까지는 임시대의원총회 시 건의문에 채택된 사항임)
- 5) 격정 보험충원을 위하여 정책당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치과 전문분야별 보험과 보험제도미즈 외국의 보험을비교 연구하여 보험관계 자료를 수집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치과보험 연구위원회의를 기구 설립이 필요함.
- 6) 수시로 변경되는 보험사항을 회원에게 주지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하여 보험관계 해설책자를 주기적(매2년)으로 발행 요망.
- 7)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보원위원회의 및 의료인 국민보장보건의회의의 경제문제등을 접어적절한 입장과 의의에 보원위원회의의 예산종액과 더불어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이 필요하며 아울러 협회 보험이사는 상근이사로서의 가급적 개선을 하지않는 방법을 고려하기 바람.
- 8) 수입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우수한 기저재의 수입관절로 양질의 진료를 유도하도록 요망.

2. 치과인 인력의 적정수급문제

- 1) 교수요원의 법정 정원 미달 및 교육시설이 미비한 치과대학은 학생정원을 감축 조정할것과 일정지역에 편중된 치과대학의 동태합동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반성시키고 동시에 전일 교수요원의 확대를 출장을 금지 요망
 - 2) 치과의사의 처지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고시에 평가와 실시시험을 병행함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관장 시행하도록 요망.
 - 3) 보건의사부및 지방행정부에서 구강보건담당관을 임용하여 행정전환을 기할것과 근로기준법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구강검사의 의무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성에 치과진료실을 설치하도록 적극 추진 요망.
 - 4) 공동 개원 (Group Practice)의 행정적인 지원 요망.
 - 5) 의료법 및 치과의사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진료행위를 하는 회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요망.
 - 6) 현대인의 적인 AIDS감염에 위험성이 있는 치과의사 보호에반 대비책의 강구 요망.
- ☆ 우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의 건의원은 위 건의사항의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며 협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는 대의원총회의 소집도 요구할 것이다.

결의문

우리 치과인은 다원화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자부하며, 그리고 의료보험 시행으로 국민다수에게 전민적인 구강보건 향상을 가져온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과 의료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제반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도는 의료인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불합리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는 예산상의 뒷받침없이 오직 정책으로 내세워 의료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환자는 획일적인 진료를 받을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어온 의료보험 10년간의 시행착오가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전에 원천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것이며 아울러 문제점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 1) 보험청을 신설하여 보험자단체는 피보험자 관리업무를 의료단체는 심사업무를 관장하여야 한다.
- 2) 비합리적인 의료보험수가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와 치과의료단체와의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치과진료의 특수성을 감안, 무형의 기술료가 포함된 진료수가를 책정할수 있도록 요구한다.
- 3) 환자에 대한 진단, 처치등 치과의사고유의 진료업무에 어떠한 규제나 역제가 배제되어서는 아니되며 치과의사의 상근심사위원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 4) 현행 의료관계법령의 비합리적인 조항을 폐쇄하여 의료인의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적장치와 비민주적인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강제지정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으로 위하여 국민건강의 기본이 되는 구강위생의 역군으로 치과의사로서 비롯한 치과계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현안문제점 해결을 위한 결의와 함께 위와같은 사항은 국민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임을 다시한번 밝히며, 우리 치과의료인은 이 모든 조건들이 관철되지 않을때에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대한 협의의 협력을 유보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면서 보험 관계당국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1987년 9월 10일

1987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원 일동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원 일동